

자가 거주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 of Homeownership on Divorce Decisions of Married Household Heads

이 수 영 (Lee, Soo-Young)**

정 의 철 (Chung, Eui-Chul)***

< Abstract >

Although many studies have sought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divorce at micro- and macro-levels, there are only few studies that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homeownership on divorce decisions in Korea. Us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11 to 2019 and employing a discrete-time hazard mode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omeownership on the divorce hazard rate of married household heads. By dividing tenure status into owner-occupation, cheonsei, and monthly ren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each tenure status on divorce hazard rate are also analyzed.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heads who are homeowners have a lower risk of divorce than those who are tenants. Compared to tenant household heads, home-owning household heads are likely to continue to be married for longer periods. This finding suggests that homeownership not only acts as a financial barrier to divorce, but it also increases marital satisfaction by providing housing stability. On the other hand, household heads under monthly rental contracts are found to have a higher risk of divorce than home-owning household heads. The burden of higher housing costs relative to income and the consequent economic stress appear to cause marital dissatisfaction, resulting in increased risk of divorce.

Keyword : Homeownership, Divorce, Discrete-time Hazard Model, 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통계청(2021)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11,615건의 이혼 건수는 2003년 166,6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0년 106,500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이혼율 역시 1970년 0.4건에서 2003년 3.4건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0년 2.1건으로 다소 감소한 패턴을

보였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데, 남성은 2010년 45.0세에서 2020년 49.4세로, 여성은 2010년 41.1세에서 2020년 46.0세로 증가하였다.

여전히 높은 수치인 이혼 건수와 이혼 연령의 꾸준한 증가는 가족 해체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가족 해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해 정부의 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혼 감소를 위해 심리 상담 등의

* 본 연구는 이수영(2022)의 박사학위 논문 "자가 거주가 사회적 자본 창출 활동, 결혼 및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한 것임.

** 본 학회 정회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sooyoung6048@hanmail.net, 주저자

*** 본 학회 정회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chung@konkuk.ac.kr, 교신저자

제도적 노력과 이혼 숙려제 등의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혼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학계의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가족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부터 경제적 요인들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혼 결정을 연구한 Becker et al.(1977)는 결혼 생활에서 기대하는 효용이 이혼 시에 기대하는 효용보다 낮다면 개인은 이혼을 선택하며, 결혼 생활에서 기대하는 효용이 작을수록 이혼 확률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의 효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결혼의 효용을 증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자가 거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Brüderl and Kalter, 2001; Eriksen, 2010; Farnham et al., 2011; Grinstein-Weiss et al., 2014; Krapf and Wagner, 2020).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터전일 뿐만 아니라 가구의 형성, 자녀의 출산 및 교육, 세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 다른 가족과의 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정의철, 2012). 그러나 주택은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거래 당시 목돈이 필요하며, 주택을 구입한 후에도 유지관리 목적으로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자가 거주에는 금융 및 비금융 비용이 수반되는데 부부일 경우 미혼보다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자가 거주는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향후 주거지 이동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지 이동변화가 없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입에 대한 전망이 있는 부부일 경우 미혼에 비해 자가 거주에 따른 주거지 제약으로 인한 손실을 겪을 위험이 작다(Mulder, 2006). 이와 같은 자가 거주와 결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자가 거주는 결혼 특화 자본 중 하나로 손꼽힌다(South and Spitze, 1986; Ono, 1998; Brüderl and Kalter, 2001; Cooke, 2006).

하지만 자가 거주와 이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racher et al.(1993)은 자가 거주는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적 보상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재정적 또는 정서적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가 거주는 이혼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Grinstein-Weiss et al.(2014)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은 가장 큰 자산이자 부의 원천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중 한 사람은 그 집을 떠나야 하거나 재산 분할로 가계의 주요한 자산인 주택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이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자가 거주에 따른 보상이 주거안정성을 증가하기 때문에 자가 거주가 이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Krapf and Wagner(2020)는 자가 거주는 임차 거주보다 주택의 품질이 더 나은 경향이 있으며, 자가 거주자는 주택 구입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있을 경우 개인의 취향에 맞춰 집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성취에 대해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며, 이는 결혼 생활의 질 및 안정성 증가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Eriksen(2010)은 자가 거주에 따른 자본이득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독립성 효과’가 유발되어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으로 인한 개인의 효용 증가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석준·채수복(2017)은 광역시·도별로 구축한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자산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이혼 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비용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 이혼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자가 거주가 이혼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가 거주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인 최석준·채수복(2017)의 연구는 집계자료에 기초함으로써 주택점유형태(자가 거주) 자체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어려웠으며, 지역별 이혼율과 주택가격 변화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가 거주는 주택가격 상승 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므로 이를 통한 자산효과가 이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결혼 상태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거안정성과 주거만족도를 높여 결혼의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자가 거주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혼 가구에 대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자가 거주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2011년)부터 22차년도(2019년)까지의 개인 및 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 기준 만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를 추출하여 이산적 위험률 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추정하였다. 또한, 주택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로 세분화하여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차별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이혼 결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실증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자료와 변수 측정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추정 결과를 해석하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를 제시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이혼 결정을 분석한 Becker et al.(1977)의 이론은 Becker(1973, 1974)의 결혼 결정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잠재적 이혼 대상자는 결혼일 때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이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높을 때 이혼을 선택한다. 이때 개인의 이혼 결정은 결혼 시 연령, 교육수준, 연간 소득, 자녀 수 등과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의 인구학적 및 경제적 요인들이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 가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석준·채수복(2017)은 Becker et al.(1977)의 이론에 기반하여 이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주택 요인을 꼽았으며, 주택 가격과 전세가율 변화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별(제주도, 세종시 제외) 거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전세가율이 증가할수록 이혼율은 감소한 반면 매매가격지수가 증가할수록 이혼율은 증가하였다. 전세가율지수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세가율은 혼인 상태 전환에 따른 상대적인 주거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가율 증가는 주거비 부담을

일으켜 이혼율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주택시장 상승기에는 자산 증가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이혼 후 주거지 마련이 용이하여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과 주택시장 하락기에는 주택시장이 호전될 때까지 관망하는 경향에 따라 자산 처분 및 이혼 유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나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효과가 후자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에서는 주택점유형태와 이혼의 관계에 대해 자가 거주시 명의자 형태, 주택 가격 등을 이용하여 주택점유형태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바라보았다.

Brüderl and Kalter(2001)은 독일의 Mannheim 이혼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가 거주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콕스의 비례적 위험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가 거주는 이혼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생활이 안정적인 부부일수록 자가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가 거주와 이혼 사이에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부부의 첫 번째 갈등 발생 여부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자가 거주는 이혼 가능성을 3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ksen(2010)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Tulsa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행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 거주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급된 보조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보조금 지급 4년 후에 이혼 상태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에 대해 자가 거주로 인한 자산 축적이 경제적 독립성을 유발하여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하였다.

Farnham et al.(2011)은 주택 가격 변화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인구조사와 연방 주택금융청의 대도시 지구 수준의 총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이 하락할 시 자가 거주자의 이혼 가능성은 감소하는 반면 임차 거주자의 이혼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변화는 자산 효과와 거래비용 변화의 혼합을 통해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은 자가 거주자의 자산 제약과 거래비용 상승으로 이혼으로 인한 자산 배분량을 축소시켜

이혼으로 인한 효용을 낮추기 때문에 이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한편, 주택 가격의 하락은 임대료 감소를 동반하고 이는 이혼 후 주거비 감소를 뜻하기 때문에 임차 거주자의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주택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Grinstein-Weiss et al.(2014)은 중·저소득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미국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가입한 응답자와 이 응답자의 근린 지역에 임차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가 거주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적 위험률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가 거주는 이혼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교환이론에 의거한 해석을 제공하였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계에 따른 보상이 많고 비용이 적을수록 관계를 매우 만족스럽고 안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자가 거주자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보상은 자가 거주에 따른 주거안정성이며, 비용은 이혼으로 주요한 자산인 집을 잃는 것이다. 자가 거주자들에게 집은 가장 큰 자산이자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혼은 이들에게 보상보다 비용이 더 큰 관계를 의미하므로 자가 거주는 이혼 위험률을 감소시킨다.

Krapf and Wagner(2020)는 주거조건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일의 가족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적 위험률 모형의 연속형 형태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추정하였다. 주거조건에는 주택점유형태, 주거 밀도, 주택 구입 가능성이 해당된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거주와 임차로 나뉘지며, 자가 거주는 명의자에 따라 공동명의, 파트너 중 한 사람의 명의, 제3자(파트너의 부모님) 명의로 세분화하였다. 주택 구입 가능성은 주택 구입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가구의 가용 소득 비율을 뜻하며, 가구 소득에서 주거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구 구성원 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분석 결과, 제3자 명의의 자가 거주, 임차 거주, 공동명의의 자가 거주 순으로 이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혼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며 주거 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가구의 재정적 특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구의 재정적 특성은 가정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의 재무상태는 결혼 안정성이나 부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양은모·배호중, 2017). 따라서 가구의 재정적 특성이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hang and Lee(2006)는 가구 소득 및 부채와 이혼의 관계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통합 및 모집단 평균 로짓 회귀모형(Pooled and Population-averaged Logit regressions)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은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나 총 가구 소득은 이혼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구 부채를 6개의 하위 범주(금융기관, 비금융기관, 개인, 보증금, 선불금, 기타)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보증금이 많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부 사이에 이혼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주 거주지 외에 임대 가치가 높은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여 재산 보유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결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콕스의 비례적 위험 모형으로 추정한 홍백의 외(2009)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연간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Copur and Eker(2014)는 터키의 공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재정 상태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의 재정 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er(1973, 1974)는 배우자들의 성별에 따른 전문화는 결혼 생활의 효용을 극대화해 결혼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South(2001)는 미국의 소득 역학 패널조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자료를 이용하여 아내의 고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적 위험률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내의 고용은 이혼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간의 전문화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켜 결혼 생활의 안정성

을 높이는데, 아내의 고용으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문화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하였다.

Killewald(2016)는 미국의 PSID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직장 경험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적 위험률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아내가 정규직 고용인 경우 이혼 위험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립 관점에서 소득 증가는 결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를 감소시켜 결혼 만족도가 낮을 시 결혼 생활을 종료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젠더적 관점에서는 직장 생활로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젠더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해석하였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에서 진행된 홍백의 외(2009), 최석준·채수복(2017)의 연구를 제외하면 자가 거주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런데 홍백의 외(2009)의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중 이혼을 경험한 표본에는 $t-1$ 시점의 변수를, 결혼을 유지한 표본에는 연구 기간 중 마지막 연도 시점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의 측정 시점이 혼인 상태별로 다르게 사용된다면 통제변수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통제변수로 주택점유형태를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석이 제공되지 않아 주택점유형태와 이혼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최석준·채수복(2017)의 연구는 주택 가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제변수로 매매 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사용하였고, 매매가격지수는 자가, 전세가격지수는 차가를 의미하는 형태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과 주택점유형태를 연결하여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주택점유형태 자체의 영향력은 분석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는 위 연구들과 달리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 거주 자체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이혼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를 매 시점마다 결정하게 된다. 이혼을 결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크다면 개인은 이혼을 선택할 것이다. 매 시점마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결정은 각 시점에서 개인의 인구학적, 경제적, 주택 시장 특성요인 및 이러한 요인들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개인의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확률뿐만 아니라 이혼까지의 기간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산적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III. 실증분석모형 및 자료

1.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Allison(1982)이 제시한 Cox의 비례적 위험 모형의 이산적 형태를(discrete time) 이용한다. 혼인 상태가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하는 사건은 연속적인 시간대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지만 설문 조사와 같은 자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혼인 상태를 측정한다. Allison(1982)은 이러한 시간의 불연속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가정한 Cox의 비례적 위험 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잠재적 이혼 대상자는 매 시점마다 결혼 생활 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매 시점마다 이루어지는 결정은 제반 변수들과 제반 변수들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잠재적 이혼 대상자의 혼인 상태 전환과 혼인 상태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위험률(hazard rate)로 혼인 상태 전환과 혼인 상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위험률은 특정 시점 이전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특정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 기에서의 위험률은 분석 출발 시점(0기)에 기혼 가구주가 $t-1$ 기까지 계속해서 혼인 상태를 기혼으로 유지하다가 t 기에 혼인 상태를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시킬 확률이다. 따라서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석 출발 시점부터 특정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관찰기간 동안 가구주의 혼인 상태 전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절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관찰기간의 출발 시점부터 마지막 시

점까지 혼인 상태를 기혼으로 유지하는 가구주는 절단된 자료이며, 위험률 모형은 이러한 절단된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다.

기혼 가구주 i 가 t 기에 혼인 상태를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시킬 위험률을 $h_{it}(X_{it-1})$ 라고 할 때, 이는 벡터 X_{it-1} 라는 특성을 가진 기혼 가구주 i 가 $t-1$ 기까지 혼인 상태를 기혼으로 유지하였다는 전제하에 t 기에 이혼을 선택할 조건부 확률을 뜻한다. 즉, T_i 를 기혼 가구주 i 가 혼인 상태를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시킬 시점을 의미하는 확률변수라고 한다면 h_{it} 는 다음과 같다.

$$h_{it} = P(T_i = t | T_i \geq t-1, X_{it-1}) \quad t = 1, 2, 3 \dots \quad (1)$$

h_{it} 는 설명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각 시점에서의 기준 위험과 각 시점별 기혼 가구주의 인구학적, 경제적, 주택 시장의 특성 차이에 따라 변화한다. 기혼 가구주의 혼인 상태 전환 위험률은 시간과 개인 특성에 의존하는 식 (2)와 같은 로지스틱 함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h_{it} = \frac{1}{1 + \exp(-\sum_{j=1}^J \alpha_j D_{jit} - \sum_{k=1}^K \beta_k X_{kit-1})} \quad (2)$$

여기서 D_{jit} 는 기혼 가구주 i 가 j 시점에 혼인 상태를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t=j$)시키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X_{kit-1} 은 기혼 가구주 i 의 $t-1$ 시점에서의 k 번째 특성 변수로 시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절편항($\alpha_1, \dots, \alpha_j$)은 각 시기에서의 기준 위험수준을 의미하고 각 특성이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계수(β_1, \dots, β_K)를 통해 측정된다. 식 (2)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log\left(\frac{h_{it}}{1-h_{it}}\right) = \sum_{j=1}^J \alpha_j D_{jit} + \sum_{k=1}^K \beta_k X_{kit-1} \quad (3)$$

식 (3)에서 기혼 가구주 i 가 $t-1$ 시점까지 혼인 상태를 기혼으로 유지하다가 t 시점에 혼인 상태를 이혼으로 전환시킬 오즈(odds)의 로그값은 시간 더미 변수 및 개인특성 변수와 선형함수 관계로 설정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한편 관찰기간 동안 혼인 상태가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우도는 $t-1$ 시점까지 혼인 상태가 변동되지 않았을 확률과 t 시점에 혼인 상태가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될 확률의 곱이고 관찰기간 동안 계속 기혼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t 시점까지 매 시점 혼인 상태에 변동이 없을 확률의 곱이므로 로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L = \sum_{i=1}^n \sum_{j=1}^{t_i} y_{it} \log[h_{ij}/(1-h_{ij})] + \sum_{i=1}^n \sum_{j=1}^{t_i} \log(1-h_{ij}) \quad (4)$$

식 (4)에서 기혼 가구주 i 가 t 시점에서 혼인 상태를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했다면 해당 시점에서 $y_{it} = 1$ 이고 그 이전 시점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되며, 만일 모든 시기에서 혼인 상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y_{it} = 0$ 이다. 식 (4)는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2. 자료 및 변수 측정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4차년도(2011년)부터 22차년도(2019년)까지의 개인 및 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가거주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혼인 상태를 추적하는 패널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1년에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면서 혼인 상태가 기혼인 가구주이며, 이들의 혼인 상태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하였다. 이때, 혼인 상태가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된 가구주는 혼인 상태가 이혼으로 전환된 시점까지, 혼인 상태에 변동이 없는 가구주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분석 대상은 2,787가구이며 총 22,050개의 관찰치를 생성하였다.

위험률(h)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가구주의 혼인 상태를 매 연도(t)마다 확인하여 혼인 상태가 이혼으로 관찰되면 1, 기혼으로 관찰될 시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위험률은 $t-1$ 시점까지 혼인 상태를 기혼으로 유지하다가 t 시점에 혼인 상태를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시킬 확률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t-1$ 시점에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가구 특성과 주택 시장 특성, 거주 지역 특성을 이용하였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 1)을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특성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였다.¹⁾ 가구주 근로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9년 기준 실질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여 추정에 이용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Becker et al.(1977)의 이론에 근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결혼으로 인한 효용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보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의 근무 시간, 종사상 지위, 소득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원 자료에서 위와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자료에 대한 배우자의 응답에는 결측치가 많았고 배우자의 성별 비중은 본 연구의 분석 출발 시점인 2011년 기준 남성 4.3%, 여성 95.7%로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많았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를 활용하기에는 관찰치 수가 매우 적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구 특성으로 가구 순자산과 미취학 자녀 수를 포함했다. 가구의 자산은 가구의 재정만족도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만족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혼 안정성 또는 부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다(양모노·배호중, 2017). 이처럼 가구의 자산은 결혼으로 인한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을 대변하는 가구 순자산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구 순자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9년 기준 실질 순자산으로 환산하여 추정에 이용하였다.

자녀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미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만 7세 이하 자녀 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녀는 결혼 생활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혼 특화 자본 중 하나로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다(South and Spitze, 1986; Ono, 1998; Waite and Lillard, 1991; Cooke, 2006; Kalmijn and Poortman, 2006).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분업을 통한 전문화에 기초하

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가임기, 유아기 및 미취학 연령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 증가로 이어져 이혼 위험률을 감소시킨다(Waite and Lillard, 1991; Bracher et al., 1993).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변수는 자가 거주 여부이다. 자가 거주 여부는 주택점유형태를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자가 거주이면 1, 임차 거주이면 0의 값을 부여하여 추정에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주택점유형태에 대해 불명확하게 응답(주택점유형태를 기타나 무응답 한 가구)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한 가구²⁾ 및 거주주택의 종류를 상가주택이나 기타로 응답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주택점유형태를 측정하였다.

주택 시장 특성으로 거주 지역의 실질 평균 주택 전세가격과 과거 1년 동안의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을 이용했다. 이혼 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이혼에 따른 효용을 증감시키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이혼 후에는 주택 구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주택 전세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거주 지역의 실질 평균 주택 전세가격은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의 지역별(광역시도단체 기준) m²당 평균 주택 전세가격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9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은 지역별 전세가격 지수의 과거 1년간 변화율을 측정 후 1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거주 지역 특성으로 거주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하고 기타 지방을 기준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관찰되는 시점(t)에 대한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3. 위험률 및 기초통계량

<표 1>은 2011년에 혼인 상태가 기혼인 만 20세 이상 가구주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혼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위험률은 분석 기간 첫 시점에

1) 배우자 연령과 교육수준을 설명변수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배우자 연령과 가구주 연령, 배우자 교육수준과 가구주 교육수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2)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이나 주택 가격을 0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 한 가구, 주택점유형태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이나 해당 보증금이나 월세를 0으로 응답한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서 기혼으로 관찰된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특정 연도에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된 비율이며 생존율은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계속해서 기혼을 유지한 비율이다.

<표 1> 혼인 상태 전환 위험률 및 생존율

혼인 상태 전환 시기	총 표본 수	표본 수		위험률	생존율
		이혼 전환	기혼 유지		
2012	2,787	11	2,776	0.39	99.61
2013	2,776	13	2,763	0.47	99.14
2014	2,763	6	2,757	0.22	98.92
2015	2,757	7	2,750	0.25	98.67
2016	2,750	5	2,745	0.18	98.49
2017	2,745	5	2,740	0.18	98.31
2018	2,740	8	2,732	0.29	98.03
2019	2,732	10	2,722	0.37	97.67
합계	22,050	65	21,985		

2011년 기혼 가구주는 총 2,787명이었으며, 이들의 혼인 상태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한 결과 혼

인 상태가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된 가구주는 65명으로 관찰됐다.³⁾ 반면, 2019년까지 기혼 상태를 유지한 가구주는 2,722명으로 분석 기간 중 혼인 상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절단된 표본이다. 매 연도 혼인 상태가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된 비율(위험률)은 2013년이 0.47로 가장 높고 2016년과 2017년이 0.18로 가장 낮아 위험률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구축된 22,050개의 관찰치를 이용하여 t 시점의 혼인 상태별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t 시점에 이혼으로 관찰된 표본은 $t-1$ 시점에서 자가 거주하는 비율과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은 t 시점에서 기혼으로 관찰된 표본보다 평균 6세 낮았다. 가구주가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비율과 가구주 근로소득은 t 시점에 이혼으로 관찰된 표본에서 더 낮았다.

한편, 미취학 자녀 수는 t 시점에 기혼으로 관찰된 표본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 주택 전세가격과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과 같은 주택 시장 요인은 t 시점의 혼인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 시점에 이혼으로 관찰된 표본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표 2> 기초통계량

설명변수		t 시점 혼인 상태				
		기혼		이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1$ 시점	주택점유형태 (자가=1)	0.762	0.426	0.569	0.499	
	가구주 성별 (남성=1)	0.963	0.188	0.923	0.269	
	가구주 연령	55.101	13.412	49.015	12.249	
	가구주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1)	0.380	0.485	0.277	0.451	
	실질 가구주 근로소득 (백만원)	31.517	30.099	26.786	22.792	
	실질 순자산 (천만원)	28.364	34.634	20.558	33.818	
	미취학 자녀 수	0.252	0.593	0.246	0.469	
	실질 주택 전세가격 (만원/m ²)	213.896	88.412	214.018	80.291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 (%)	0.011	0.029	0.011	0.028	
	거주 지역	수도권	0.454	0.498	0.477	0.503
		비수도권 광역시	0.222	0.416	0.262	0.443
		기타 지방	0.324	0.468	0.262	0.443
표본 수		21,985		65		

주: 연도 더미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에서 생략함.

3) 통계청(2019)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2012년~2019년 사이 유배우 이혼율(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의 평균은 4.57이다. 동일한 기준의 이혼율 지표를 본 연구 표본에 적용하면 2012년~2019년 사이 2.95로 통계청의 수치보다 낮다. 그 이유는 통계청의 경우 매년 새로 결혼한 가구를 포함한 전체 유배우 가구를 대상으로 이혼율을 측정하는 반면 본 연구는 2011년 당시 기혼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율을 집계하는 표본 구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광역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임차 거주할수록,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수록, 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미취학 자녀 수가 적을수록,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이혼 상태를 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할 위험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추정 결과 및 해석

<표 3>은 이산적 위험률 모형 추정 결과이다. 모형 1 추정 결과 자가 거주에 대한 추정계수는 음(-)으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여 자가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는 임차 거주에 비해 이혼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는 임차 거주에 비해 이혼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늦거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주택은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가계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유자산이다. 이혼을 고려할 시 주택이라는 가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게 되므로 자가 거주는 이혼에 대한 재정적 장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가 거주에 따른 높은 주거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여 결혼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여 이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Bracher et al.(1993), Grinstein-Weiss et al.(2014), Krapf and Wagner(2020)의 주장이 우리나라 기혼 가구주에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 자가 거주자들의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가 거주자들은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 집을 꾸미고 유지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고 주택을 가족을 위한 장소인 안식처(shelter)로 여기게 된다(Andre et al., 2019). 또한, 자가 거주는 임차 거주에 비해 평균 거주 기간이 긴 편으로 주거 공간 및 주거 환경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등 자가 거주로 인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가 거주는 가족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심리적 유대감 부여를 통해 결혼으로 인한 효용을 증가시켜 이혼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 위험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Chang and Lee(2006)와 홍백의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연령이 이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의 비선형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 제곱 변수를 추정해 보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혼 위험률에 대한 가구주 성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일수록 이혼 위험률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은 부부간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부부 사이의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닌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생활 및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고려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Amato and Previti, 2003).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전자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실질 근로소득은 이혼 위험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가구의 경제력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으로 대표할 수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의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작아지므로 이는 가구의 경제적 갈등 감소를 일으켜 결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실질 순자산이 이혼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및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부부에게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Pent-up demand'의 효과가 있음을 실증 분석한 Waite and Lillard(199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⁴⁾

실질 주택 전세가격과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이 이혼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시장 상승기 또는 하락기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주택 가격 특성이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최석준·채수복, 2017).

4) 취학 자녀(만 8세 이상 19세 이하) 수 변수를 추정해 추가해 보았으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가 거주가 이혼 위험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취학 자녀 수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 거주와 미취학 자녀 수 상호작용항을 추정해 보았으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 시장이 상승기일 때 임대료 증가가 동반된다면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주거비 부담에 따라 이혼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 시장 하락기의 경우 임대료 감소가 동반된다면 주거비 부담이 작아지면서 이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는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⁵⁾ 거주 지역 더미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는 주택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로 세분화한 후 자가 거주를 기준변수로 이용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월세로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는 자가

거주에 비해 이혼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거주가 이혼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월세로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는 자가 거주에 비해 이혼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빠르거나 결혼 생활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월세 거주는 매달 소득에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거주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크다. 또한, 가구 소득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에 대해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

<표 3> 추정 결과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상수항		-0.365	-0.36	-0.973	-0.95
주택점유형태	자가	-0.528 *	-1.88	-	-
	임차	-	-	전세	0.177
				월세	0.904 ***
미취학 자녀 수		-0.583 **	-2.22	-0.587 **	-2.24
가구주 성별 (남성=1)		0.037	0.07	0.037	0.07
가구주 연령		-0.071 ***	-4.92	-0.071 ***	-4.94
가구주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1)		-0.798 ***	-2.64	-0.729 **	-2.41
실질 가구주 근로소득		-0.018 **	-2.51	-0.017 **	-2.41
실질 순자산		0.001	0.32	0.002	0.51
실질 주택 전세가격		-0.001	-0.48	-0.001	-0.43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		2.305	0.37	2.646	0.42
거주 지역	수도권	0.267	0.54	0.287	0.58
	비수도권 광역시	0.408	1.11	0.394	1.07
연도 더미 (2012년=1)		-0.583	-1.04	-0.552	-0.98
연도 더미 (2013년=1)		-0.282	-0.56	-0.263	-0.52
연도 더미 (2014년=1)		-1.003	-1.52	-0.992	-1.50
연도 더미 (2015년=1)		-0.740	-1.23	-0.725	-1.21
연도 더미 (2016년=1)		-0.977	-1.56	-0.972	-1.55
연도 더미 (2017년=1)		-0.852	-1.51	-0.848	-1.50
연도 더미 (2018년=1)		-0.290	-0.61	-0.285	-0.60
Log Likelihood		-417.620		-415.895	
표본 수		22,050		22,050	

주: 1) 실질 순자산 추정계수는 원래 추정계수에 100을 곱한 값임.

2) * p < 0.1, ** p < 0.05, *** p < 0.01.

5) 실질 주택 전세가격과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 주택 매매가격과 실질 주택 매매가격 변화율을 구하고 이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실질 주택 전세가격 및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과 연도 더미와의 상관성이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도 더미를 제외하고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실질 주택 전세가격 및 실질 전세가격 변화율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비는 가구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주거 준비에 대한 무력감은 결혼 생활에 대한 무력감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불충분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Bracher et al., 1993). 경제적 스트레스와 무력감은 부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결혼 만족도 및 안정성을 감소시켜 이혼 위험률을 높이게 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주택점유형태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별적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가구가 결혼 생활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안정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점유형태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높은 수준의 이혼 건수와 이혼 연령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해 정부의 복지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이에 대해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이혼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한 이혼 결정 연구가 등장하면서 결혼으로 인한 효용 증감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자가 거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택은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터전이지만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당시 목돈이 필요하며,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수반된다. 또한, 자가 거주는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미래의 주거지 이동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가 거주에는 고비용에 따른 부담과 주거지 이동에 대한 제약이 동반되며, 부부일 경우 미혼보다 자가 거주에 동반되는 부담이 작기 때문에 자가 거주는 결혼 특화 자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러한 자가 거주와 결혼의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상반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 구입은 가구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이혼을 할 시 재산 분할에 따라 주택이 지닌 자산가치와 물리적 형태를 잃게 되어 자가 거주는 이혼에 대한 재정적 장벽의 역할을 하며, 자가 거주에 따른 높은 주거만족도는 결혼 생활

의 질 및 안정성 증가와 이어져 결혼 생활의 보상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가 거주는 이혼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자가 거주에 따른 자본 이득은 경제적 독립성을 유발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는 이혼 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비용 부담을 낮추기 때문에 자가 거주는 이혼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처럼 자가 거주는 이혼 결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가 거주와 이혼의 관계를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011년(14차)부터 2019년(22차)까지의 9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만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자가 거주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적 위험률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주택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로 세분화하여 각 주택점유형태가 이혼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차 거주에 비해 자가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의 이혼 위험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가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는 임차 거주보다 이혼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늦거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 거주는 이혼에 대한 재정적 장벽의 역할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효용을 높여 이혼 위험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취학 자녀 수는 이혼 위험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분업과 전문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데 특히 유아기 및 미취학 연령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녀는 결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이며,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결혼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를 세분화한 경우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월세로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의 이혼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에 따른 생활비 지출 여력 감소와 가구의 미래 준비 부족은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결혼 만족도 및 안정성을 감소시켜 이혼 위험률을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자가

거주가 이혼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의 효과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전세 거주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자가 거주와 이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가 거주와 이혼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혀냈다. 가족 해체, 자녀 양육 등 이혼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혼 가구의 결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자가 거주가 이혼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무주택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보다 타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자가 거주로 인한 결혼 안정성이 이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특성상 여성의 경제활동 자료에는 결측치가 많아 분석에 활용할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이혼 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된 만큼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포함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가 거주 효과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접수일 : 2022년 7월 18일
논문심사일 : 2022년 7월 23일
게재확정일 : 2022년 8월 23일

참고문헌

1. 양은모 · 배호중, “신혼가구의 재무상태와 이혼: 부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pp. 23-53
2. 이수영, “자가 거주가 사회적 자본 창출 활동, 결혼 및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 정의철,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2, pp. 19-31
4. 최석준 · 채수복, “전세 및 매매가격 변동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18권 제1호, 서울연구원, 2017, pp. 59-76
5. 홍백의 · 박은주 · 박현정 · 박진,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pp. 307-328
6. 통계청, “2019년 혼인 · 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0
7. 통계청, “2020년 혼인 · 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1
8. Allison, P. D., “Discrete-time Methods for the Analysis of Event Historie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3, 1982, pp. 61-98
9. Amato, P. R. and D. Previti, “People’s Reasons for Divorcing: Gender, Social Class, the Life Course, an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4 No. 5, 2003, pp. 602-626
10. André, S., Caroline, D. and M. Ruud, “What do housing wealth and tenure have to do with it? Changes in wellbeing of men and women after divorce using Australian panel”, *Social Science Research*, Vol. 78, 2019, pp. 104-118
11. Becker, G. S.,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4, 1973, pp. 813-846
12. Becker, G. S.,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2, 1974, pp. S11-S26
13. Becker, G. S., E. M. Landes and R. T. Michael,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 6, 1977, pp. 1141-1187
14. Bracher, M., G. Santow, S. P. Morgan and J. Trussell, “Marriage Dissolution in Australia: Models and Explanations”, *Population Studies*, Vol. 47 No. 3, 1993, pp. 403-425
15. Brüderl, J. and F. Kalter, “The dissolution of marriages: The role of information and marital-specific capital”,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Vol. 25 No. 4, 2001, pp. 403-421
16. Chang, Y. and K. Y. Lee, “Household Debt and Marital Instability: Evidence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27, 2006, pp. 675-691
17. Cooke, L. P., “Doing Gender in Context: Household Bargaining and Risk of Divorc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2 No. 2, 2006, pp. 442-472
18. Copur, Z. and I. Eker,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ssues and marital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Vol. 7 No. 5, 2014, pp. 683-697
19. Eriksen, M. D., “Homeownership subsidies and the marriage decisions of low-income household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40 No. 6, 2010, pp. 490-497
20. Farnham, M., L. Schmidt and P. Sevak, “House Prices and Marital Stab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1 No. 3, 2011, pp. 615-619
21. Grinstein-Weiss, M. G., K. R. Manturuk, S. Guo, P. Charles and C. Key, “The Impact of Homeownership on Marriage and Divorce: Evidence from Propensity Score Matching”, *Social Work Research*, Vol. 38 No. 2, 2014, pp. 73-90
22. Kalmijn, M. and Anne-R. Poortman, “His or Her Divorce? The Gendered Nature of Divorce and its Determinan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2 No. 2, 2006, pp. 201-214
23. Killewald, A., “Money, Work, and Marital Stability: Assessing Change in the Gendered Determinants of Divor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81 No. 4, 2016, pp. 696-719
24. Krapf, S. and M. Wagner, “Housing Affordability, Housing Tenure Status and Household Density: Are Hous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Union Dissolut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36, 2020, pp. 735-764
25. Mulder, C. H., “Home-ownership and family forma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 21 No. 3, 2006, pp. 281-298
26. Ono, H., “Husband’s and wives’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0 No. 3, 1998, pp. 674-689
27. South, S. J. and G. Spitze,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 No. 4, 1986, pp. 583-590
28. South, S. J., “Time-Dependent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2, 2001, pp. 226-245
29. Waite, L. J. and L. A. Lillard, “Children and Marital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ical*, Vol. 96 No. 4, 1991, pp. 903-953
30.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1~2019
31. KB부동산 홈페이지, <https://onland.kbstar.com>

<국문요약>

자가 거주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수 영 (Lee, Soo-Young)
정 의 철 (Chung, Eui-Chul)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이혼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자가 거주가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 거주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적 위험률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로 세분화하여 각 주택점유형태가 이혼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자가 거주하는 기혼 가구는 임차 거주에 비해 이혼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는 임차로 거주할 때에 비해 이혼 시점이 늦거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 거주가 이혼에 대한 재정적 장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여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세로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는 자가 거주에 비해 이혼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를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택점유형태가 기혼 가구주의 이혼 결정에 차별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제 어 : 자가 거주, 이혼, 이산적 위험률 모형, 결혼 만족도